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

의안 번호	118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,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제284회 정례회에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받았으나,
- 다. 출자금 사용처를 당초 빈집매입에서 빈집 및 빈집인접지 매입으로 변경하기 위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관련법령
 - 법령 : 지방공기업법
 - 조례 :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당 초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빈집의 지속적 증가로 안전사고 유발, 범죄 장소 제공,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빈집 매입 -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- 청년중심 창업 공간 및 청년·신혼부부 임대주택,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조성 	변경 없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	○ '22년까지 빈집 및 빈집인접지 1천호 매입

다. 출자동의(변경)의 필요성

- 소규모필지, 진입로확보 곤란 등으로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 활용성을 확보하고,
- 빈집과 빈집인접지 건물과의 벽체 공유로 인한 빈집정비(철거 등)시 안전상의 우려에 따라, 출자금의 사용처를 빈집 및 빈집인접지 매입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


- 2019년도 기 예산편성(빈집매입) : 244,032백만원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팀 안준희(☎2133 - 7252)

참고 자료

빈집 인접지 매입 합동개발(예시)

구분	기 매입 빈집 〔면목동 152-4, 6 (2개 필지)〕	매입 빈집 통합 활용 〔면목동 152-3, 4, 6, 7, 8 (5개 필지)〕
토지 이용 계획		
건축 계획	<p>- 막다른 도로 끝에 위치한 필지로 진입 도로폭이 협소(2m)하여 차량진입 불가</p>	
구분	기 매입 빈집 〔미아동 839-254 (1개 필지)〕	매입 빈집 통합 활용 〔미아동 839-254, 452 (2개 필지)〕
토지 이용 계획		
건축 계획	<p>- 대지면적 협소로 건축계획 수립 곤란 ※ 연접한 건물과 벽체를 공유하고 있어, 본 대상지 철거 후 인접지 건물상대 위험 (839-452 및 258번지와 벽체 공유)</p>	